

1 장애의 정의

- ✔ 장애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
- ✔ 세계보건기구(WHO)
 - 장애인은 선천적,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 능력에 결함이 발생,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모든 사람
- ✔ 장애인복지법
 - 장애인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
- ✔ 장애의 올바른 표현
 -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인 용어인 ‘장애인’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함
 - 장애가 없는 사람을 ‘정상인’이라고 부르는 대신 ‘비장애인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

2 장애 유형

- ✔ 우리나라의 장애 15유형

내부장애		정신적 장애
외부장애	내부장애	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
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	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·요루장애 뇌전증장애	

❖ 장애 유형별 필요 에티켓

① 지체장애

접근성 고려

- ▶ 배려하여 **면접/회의 장소 확인**하기
- ▶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주의
- ▶ ‘**장애인 주차구역**’ 비워두기

보조기구 필요

- ▶ 휠체어 좌석 공간 마련하기
- ▶ 허락없이 **보조기구** 사용하거나 옮기지 않기

본인의사 확인

- ▶ 도움이 필요할 때 꼭 **상대방 의사 확인**
- ▶ 문/엘리베이터 문 잡아 주기
- ▶ 체육활동 등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물어 보기

② 뇌병변장애

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

- ▶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, **다시 요청하기**

“다시 한 번, 말씀해 주시겠어요?”

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

- ▶ 업무에 필요한 **보조기기 확인** 및 지원

함께 생활하기 위해

- ▶ 넘어졌을 때 :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묻기
- ▶ 함께 걸을 때 : **보행 속도 맞추기**
- ▶ 음료수 권할 때 : **빨대 꽂아 주기**

③ 시각장애

상세히 설명하기

- ▶ 회의 중이나 말을 시작할 때 : 말하는 사람 이름 밝히기
- ▶ 복도, 통로에서 마주쳤을 때 : 가까이 다가오면 인사
- ▶ 낯선 장소 안내할 때 : 주변, 상황 설명

시설파악 돕기

- ▶ 직장 건물 구조, 시설물 **단계적 파악** 돕기
- ▶ 배치를 옮길 때, **양해를 구하고** 설명
- ▶ 구내 식당 구조가 복잡하면 **배식** 지원하기
- ▶ 음식 순서는 **시계 방향**으로 설명하기

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돕기

- ▶ 출입문을 완전히 열거나, 완전히 닫아 두는 것이 안전
- ▶ 위치를 알려줄 때 **구체적으로** 설명하기
ex) 2발짝 앞, 1미터 앞 등
- ▶ 함께 걸을 때, **지팡이 반대쪽**에서 팔을 잡고 이동

4 청각장애

알아두기	대화하기	업무수행 시
▶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한다? NO! 의사 소통 방법부터 확인 ▶ 대화의 시작은 시선을 끄는 것부터 ▶ 눈을 보며 입모양과 발음 정확하게, 필요하다면 반복	▶ 표정이나 몸짓 적극 이용 ▶ 수화 통역사가 있는 경우, 청각 장애인을 보며 직접 대화 ▶ 여러 명 대화 시,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공유	▶ 업무 지시 :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 ▶ 회의 : 중간에 확인 및 이야기할 기회 제공 ▶ 시간적 장치 마련 : 화장실 문에 '사용 중' 표지 설치 등

5 지적장애

인격 존중	반복이 중요	이해도를 고려
▶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도 욕구를 알고, 표현 가능 ↓ 의사 존중 필요!	▶ 작업 지시 :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 ▶ 근무 규정 : 근무 시간, 복장, 규칙을 반복해 설명	▶ 쉬운 말 사용하기 ▶ 지시는 한 번에 한가지 씩!

6 자폐성장애

불안감 낮추기	일상생활에서 도움주기
낮선 장소 낮선 사람 예측 못한 상황 일과 조정 → 충분한 설명, 예행연습 필요	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기능들 대중교통 이용 돈 계산

7 정신장애

약물복용 배려

- ▶ 근무 중 약 먹을 분위기 조성
- ▶ 갈증을 유발하는 정신과 약물 :
식음료 반입 금지라도 음료 마실 환경 제공
- ▶ 외출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 : 병원 방문 등

도움 줄 사람 배치

- ▶ 직장 내 고민 상담 가능한 직원 주변 배치

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- ✔ 장애인 생존권 · 노동권 보장
- ✔ 기업, 정부, 기타단체의 사회적 책임 인식
- ✔ 장애인 자아 실현
- ✔ 장애인 노동 경력과 보수, 통상적인 삶 영위
- 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 실현

2 장애인차별금지법

- 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 보장
 - > 고용
 - > 모·부성권, 성 등
 - > 가족, 가정, 복지시설, 건강권 등
 - > 장애여성, 장애아동, 정신적 장애
 - > 사법,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
 - >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
 - > 교육

3 사업주 지원 제도

- 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
- ✔ 고용환경 개선지원
- ✔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
- 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
- ✔ 세제지원

4 장애인 지원 제도

- ✔ 취업알선지원
- 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(선 배치 후 훈련)
- ✔ 현장평가/중증장애인 언턴제
- 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- ✔ 근로지원인 지원
- ✔ 맞춤형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
- 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의무

1 장애인의 날

장애인의 날



장애인의 날 지정이유 :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,
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
제정된 기념일

장애인정책비전 :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“더불어 행복한 사회”

2 장애인 학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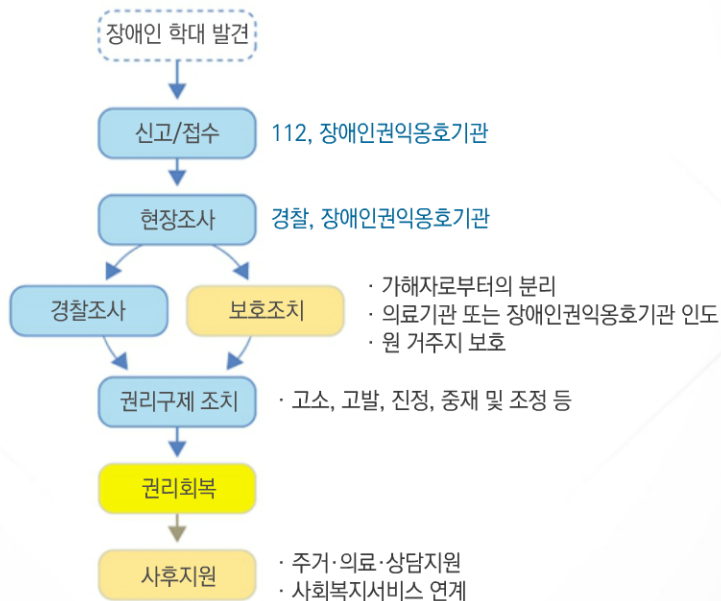
- ✓ “장애인 학대”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
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(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)
: 장애인 학대의 특성
 - 은밀하게 일어남 : 가정 내, 장애인 시설 내, 직장,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
일어날 수 있음
 -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: 보호자, 복지서비스 제공자, 직장 동료, 이웃 등
장애인과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. 반대로,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의
가장 좋은 옹호자가이기도 함
 -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대임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음 :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·방임에
놓인 장애인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?
 -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: 정신적 장애인은 피해상황을
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경우가 많음
 - 학대를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는 경우가 많음

3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

장애인 학대 “신고의무자”



☑ 장애인 학대 신고절차



4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

☑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역할

- 1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한다.
- 장애인은 단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'권리의 주체'로서 '동등한 인간'입니다.
- 2 장애인 인권교육 / 학대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돌아보고 높입니다.
- 3 당사자 권리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배양한다.
- 기본 좋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.
- 4 학대의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.
- 장애인 학대 신고(수사기관,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) / 상담(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, 장애인인권센터)

☑ 의료인, 응급구조원의 역할

- 1 학대 징후를 특히 유심히 관찰한다.
- 특히 가정 내 학대나 방임의 경우 가족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구요? 학대의 결과 일 수 있습니다.
- 2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한다.
- 장애인 학대 신고(수사기관,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)

4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

✔ 교육기관 종사자의 역할

- 1 장애를 이유로 한 따돌림, 비하 발언 등 정서적 학대를 특히 유념한다.
 - 친구들 사이의 일이 아닌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.
- 2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, 인식개선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.
 - 인권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념합니다.
 - 대규모 집합교육 보다는 실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이 바람직합니다.
- 3 학대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.
 - 장애인 학대 신고(수사기관,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)
 - 장애인 학대 상담(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, 장애인인권센터)

✔ 상담소, 보호기관 종사자의 역할

- 1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있는 경우 학대 받고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관찰한다.
 - 학대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합니다.
- 2 이용자 간 학대에 유념한다.
 - 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 아닌 경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- 학대의 피해자가 학습된 학대로 인하여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3 학대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.
 - 상담소, 보호기관이라고 해도 또 다른 학대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- 장애인 학대 신고(수사기관,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)
 - 장애인 학대 상담(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, 장애인인권센터)